

「신한카드 법인회원약관」 개정 안내

항상 신한카드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신한카드 법인회원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시행일자 : 2021년 3월 25일

현행	개정(안)	비고
<p>제 2조 (카드의 발급 및 관리)</p> <p>① 카드사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법인 명의카드, 임직원명의카드를 발급하며, 발급할 총 매수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카드사가 정합니다.</p> <p>⑥ 제②항 내지 제⑤항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게을리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p>	<p>제 2조 (카드의 발급 및 관리)</p> <p>① 카드사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법인 명의카드, 임직원명의카드를 발급하며, 발급할 총 매수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카드사가 정합니다. <u>카드사는 카드 발급 시 이용계약에 따른 계약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u></p> <p>⑥ 제②항 내지 제⑤항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u>다만,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u></p>	<p>금소법 제정에 따른 문구정비</p>
<p>제 3조 (유효기간 및 갱신발급)</p> <p>⑥ 제④ 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에 대하여 카드사는 갱신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발급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리며, 카드사는 위 통보시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갱신발급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관련법에 의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발급합니다.</p> <p>제②항 내지 제⑤항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게을리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p>	<p>제 3조 (유효기간 및 갱신발급)</p> <p>⑥ <u>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거절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거나,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거절됩니다. 다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또는 전화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발급합니다.</u></p>	<p>여전법 시행령(제6조의 6 제2호)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 22조 (약관변경 승인 등)</p> <p>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p> <p>③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p>	<p>제 22조 (약관변경 승인 등)</p> <p>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u></p> <p><u>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u></p> <p><u>2. 약관 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u></p> <p><u>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회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u></p> <p><u>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문구 변경</u></p> <p>③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의 경우 2개월) 이내에 <u>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u>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p>	<p>여전법 시행령(제6조의 6 제2호)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p> <p>약관 변경에 따른 고지절차 강화</p>
<p>제 23조 (포인트 및 기타서비스)</p> <p>①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 사용시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로 적립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다만, 회원이 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p>	<p>제 23조 (포인트 및 기타서비스)</p> <p>① <u>카드사는</u>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u>등으로</u>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u>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법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u></p>	<p>금소법 제정에 따른 문구정비</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 발급 시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2.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간,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3. 포인트 적립 제한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p>③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 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변경 시에도 사전에 고지하되 사전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p>	<p><u>법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회 또는 삭제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회나 법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해당 카드사는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u></p> <p>② 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 발급 시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2.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간,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3.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p>③ <u>카드를 이용하는 경우</u>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카드사 또는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p>금소법 제정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경사유 관련 문구 정비</p>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p><u>④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 우편 또는 팩스에 따른 서신전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그 밖에 상대방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 우편 또는 팩스에 의한 서신전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그 밖에 상대방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u></p> <p>1. 제3항 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2. 제3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p>	<p>금소법 제정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경관련 통지방법 문구정비</p>
<p>④ 포인트의 유효기한은 5년이며,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 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2개월 전에 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p>	<p>⑤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u>카드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u>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p>	<p>항번호 내림</p>
(신설)	<p><u>⑥ 회원이 결제대금을 미리 카드사에 지급한 경우에도 카드사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드립니다.</u></p>	<p>금소법 제정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경사유 관련 문구 정비</p>
(신설)	<p><u>⑦ 포인트는 회원이 결제한 금액대로 반올림 또는 절상되어 적립됩니다. 다만, 가맹점이 부담하여 적립하는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기준을 따릅니다.</u></p>	<p>금소법 제정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경사유 관련 문구 정비</p>
(신설)	<p><u>⑧ 카드사는 포인트 현금성 사용 등 회원의 포인트 이용의 편의성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u></p>	

현행	개정(안)	비고
<p>(신설)</p> <p>(신설)</p> <p>제 29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p> <p>제 30조 (약관위반시의 책임)</p> <p>제 31조 (관할 법원)</p> <p>(삭제) 제32조 (유보사항)</p>	<p>제 29조 (청약의 철회)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p> <p>제 30조 (위법계약의 해지)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제 31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p> <p>제 32조 (약관위반시의 책임)</p> <p>제 33조 (관할 법원)</p> <p>제 32조 (유보사항) 2013년 6월 30일 이전에 종전 약관에 따라 개인형법인카드를 발급받은 회원 및 카드사용자는 카드의 유효기한까지는 종전 약관 중 개인형 법인카드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p>	<p>금소법 제정에 따른 조항신설</p> <p>금소법 제정에 따른 조항신설</p> <p>조번호내림</p> <p>조번호내림 조번호내림 개인형 법인카드 상품종단에 따른 삭제</p>
<p>부칙</p> <p>제 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p> <p>(삭제) 제 2조(적용례)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합니다.</p>	<p>부칙</p> <p>제 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3조 제7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 및 캐시백 적립분부터 적용합니다.</p> <p>(삭제) 제 2조(적용례)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합니다..</p>	<p>부칙 개정 일 수정 및 캐시백 적립관련 내용추가</p>

※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게시일 1개월 이내 서면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